

새로 제정된

傳染病豫防法 施行規則 主要骨子

- ◇ 보사부는 傳染病豫防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지난 8월 19일 ◇
- ◇ 자르 部令 제570호로 공포했다. 傳染病豫防法이 작년 12월 31일 ◇
- ◇ 개정·공포됨에 따라 全文24조 부칙으로 마련된 同시행규칙은 이 ◇
- ◇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醫師등의 申告와 報告

法 第4조①항 法 제6조에 의한 申告는 다음사항에 대해 書面·口頭·電報·電話로 한다. ▲환자나 사망자의 住所·성명·생년월일·性別·직업 환자나 사망자의 호주의 住所·성명 ▲환자의 病名 및 주요증상(死亡者는 病名) ▲환자의 發病年月日(轉歸申告時는 제외) ▲환자의 初診年月日(〃) ▲환자의 診斷年月日 ▲환자의 診斷방법 ▲시체檢案時는 死亡 및 檢案年月日 ▲醫師등의 住所와 성명 및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 제1종 傳染病예방시설의 설치

「傳染病院」은 서울·부산 및 道에 두며 의료법 시행령 22조의 病院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다. 「격리病舎」는 市·郡에 두며 醫院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다. 「격리소」는 邑·面에 두며 醫院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과 같이 진료시설을 갖춘다.

◇ 제3종 傳染病예방시설의 설치

「요양소」는 서울·부산 및 道에 두며 病院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다. 「진료소」는 市·郡에 두며 醫院에 해당하는 시설(진료에 필요한 검사시설 포함)을 갖춘다.

◇ 환자의 就業금지

제1종 및 제3종 환자중 他人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당해 직업에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의 직업에 종사 할수 없다. ▲환경·식품관계법령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종사하는 직업 ▲의료업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등.

◇ 제3종 전염병요양비의 징수

제3종 전염병요양시설 또는 代用진료소에서 本人이나 보호자로부터 징수 할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시약비 ▲수술비 ▲입원료, 요양비 ▲기타진료에 소요된 경비.

◇ 두창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중두는 1세부터 2세에 달한자에게 1次접종, 6세에 달한자에게 2次접종을 시행한다. 방법은 분기침의 침끝사이에 부착된 예방약(0.0025ml)을 접종부위에 바른후 피부와 90도 각도가 되도록 침을 잡고 직경 5mm의 圓內에 출혈이 안될 정도 15회정도 난자하여 접종한다.

◇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1次 접종은 제1회가 생후2개월, 제2회가 생후

4개월, 제3회가 생후6개월이고 2次 접종은 생후 18개월, 3次접종은 6세에 달한 자에게 시행한다.

1次및 2次접종은 DPT예방약으로, 3次 접종은 DT예방약으로 매회접종시마다 각각 0.5ml씩 근육내에 주사한다.

◇百日咳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디프테리아의 1·2次 접종대상자에 준하여 실시하며 DPT예방약으로 매회 접종시마다 0.5ml씩 근육내에 주사한다.

◇파상풍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에 준한다.

◇장티푸스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서울·부산市長 또는 市長·군수가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시행한다.

생후 처음으로 접종(기초접종)할 때에는 보통 5~10일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피하에 주사한다. 즉 생후 36~48개월의 유아의 경우 1. 2. 3회 각 0.25ml씩 주사하고 기타(5~60세)의 경우 1. 2. 3

회 각 0.4ml씩 주사한다. 다만, 신체허약자및 예방약에 대해 특히 반응이 강한 者에게는 0.1ml씩 피내에 3회 주사할수 있으며 기초접종의 간격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추가접종을 할 때에는 보통 피하에 0.4ml씩 1회주사하거나 피내에 0.1ml를 주사한다. 다만 신체허약자및 예방약에 대해 특히 반응이 강한 者에게는 피내에 주사한다.

◇클레라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서울·부산市長 또는 市長·鄕守가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시행한다.

기초접종은 보통 5~7일 간격으로, 추가접종은 기초접종후 매년 피하에 다음과 같이 주사하되 클레라가 유행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추가접종을 6개월마다 실시한다. ▲7세 이하의 경우 기초접종은 1회 0.25ml, 2회 0.5ml이고 추가접종은 0.5ml ▲8~13세의 경우 기초접종은 1회 0.35ml, 2회 0.7ml이고 추가접종은 0.7ml ▲14세이상의 경우 기초접종은 1회0.5ml, 2회 1.0ml이고 추가접종 1.0ml.

明洞聖堂·主教館 등 史蹟으로 지정

文化財위원회는 1890년대의 洋式건물인 서울 明洞聖堂·主教館·舊「러시아」공사관·貞洞교회·藥峴성당·龍山신학교·德壽宮 靜觀軒 등을 史蹟으로 指定키로 의결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조사 끝에 사적으로 지정된 이들 건물은 서울大 醫大지경 이후 두번째다.

이번 지정된 건물의 건축 내용은—

▲藥峴성당=1892년 9월에 완공, 전평 1백 20평
벽돌 三廊式「고딕」건물, 「프랑스」신부「조르지·가스터」설계.

▲明洞성당 주교관=1898년 준공, 전평 4백 54평
총합 높이 45m.

지붕은 鋼板 벽돌 목재 三廊式「고딕」건물.
「조르지·가스터」설계.

▲舊「러시아」공사관=1890년 준공, 벽돌로 쌓은 「르네상스」式건물.

「러시아」인「사바틴」설계.

▲舊「벨기에」영사관=1905년 준공, 전평 4백 54평의 「고딕」式건물.

▲龍山 신학교 및 원호르 성당=1902년 준공, 「조르지·가스터」설계.

▲貞洞 제일교회=1898년 준공, 전평 1백 75평.

▲德壽宮 靜觀軒과 石造殿=靜觀軒은 1900년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전평 89·5평의 「이오니아」式건물, 石造殿 역시 1900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1천 2백 26평, 설계는 영국의인 기사「브라운」이 담당.